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4. 3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9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능 정비(안 제4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명시(안 제11조)

○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33조, 안 제91조)

○ 지방청사 설계면적 기준 정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신설  
(안 제45조 관련 별표 1)

○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기준 보완(안 제61조 관련 별표 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2023. 8.22.)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명시한 심의회의의 심의 사항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게 함.
  - 안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및 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및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에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안 제45조 관련 별표 1(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사항을 마련함. 최근 청소근로자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정부기관 내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안전을 의결함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구(區)는 이를 적용하여 추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짐. 아울러 구청사, 구의회 모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됨.

- 안 제61조 관련 별표 2(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2023. 10.4.)의 개정사항에 따른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품종구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21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능 정비(안 제4조)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명시(안 제11조)
- 다.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33조, 제91조)
- 라. 지방청사 설계면적 기준 정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신설(안 별표 1)
- 마.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기준 보완(안 별표 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3. 7. ~ 3. 27./20일간) 결과: 의견 있음
  - 구청사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의회 청사에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 신설 요구가 있어 반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  
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5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의2”를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14조 중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를 “기부채납하게”로,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를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7조, 제7조의2”를 “제7조”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영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등포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1항 중 “한다)으로서”를 “한정한다)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만원 초과 :”를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 초과 :”를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 3개월 이내 2회”를 “이하: 6개월 이내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 : 6개월 이내 3회”를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과 : 9개월 이내 4회”를 “초과: 12개월 이내 12회”로 한다.

###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6조제1항제7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등포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54조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 제1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 : 1년 이내 4회”를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과 : 2년 이내 8회”를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초과 : 3년”을 “초과: 3년”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의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5조 관련)**

1. 구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 시 면적=0.8m <sup>2</sup> ×사용 인원
	4~2.4m <sup>2</sup> /인	2.6~1.5m <sup>2</sup> /인	2~1.2m <sup>2</sup> /인	1.6~1m <sup>2</sup> /인	1.2~0.9m <sup>2</sup> /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회의실과 겸용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인	0.40m <sup>2</sup> /인	0.33m <sup>2</sup> /인		
	엘리 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인	11.52m <sup>2</sup> /인	8.64m <sup>2</sup>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 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 30~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구의회 청사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사 무 실	직원 수 × 7.2m <sup>2</sup>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sup>2</sup>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sup>2</sup>	
			기 자	50m <sup>2</sup>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sup>2</sup>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m <sup>2</sup>	
			직 원	직원 수 × 2m <sup>2</sup>	
			방청객	방청객 수 × 2m <sup>2</sup>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sup>2</sup>		
		화 장 실	구 : 44~46m <sup>2</sup>		
		기 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제61조 관련)

#### 1. 물품의 분류

- 가. 비품: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나. 소모품: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품종구분 기준

##### 가. 비품

- (1)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2)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 나.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3. 물품상태 분류기준

-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u></p> <p>2. <u>영 제7조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u></p> <p>3. <u>삭 제</u></p> <p>4.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p> <p>1.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5호에 따른 사항</u></p> <p>2. <u>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u></p> <p style="margin-left: 20px;"><u>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lt;삭 제&gt;</u></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법 제10조의2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  
기부채납하게 ----- 적합  
하여야 -----.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1. (현행과 같음)
2. -----

제7조 -----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영등포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9. (생략)

⑤ (생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 -----  
-----

3.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  
-----  
-----  
-----  
-----  
-----  
-----  
-----  
-----

4.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영 제35조제2항제3호-----  
-----.

1. 2. (생략)

⑤ (생략)

<신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 ⑥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영등포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  
-----  
-----.

한정한다)으로서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50만원-----

-----  
-----.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범  
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  
위에서 분납

<신 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  
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범  
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  
위에서 분납

④ (생 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6회 -----  
----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  
-----  
-----  
-----

1. ---- 이하: 6개월 이내 3회 ----  
-----
2. ----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
3. -----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  
-----  
-----  
-----  
-----  
-----



1. ~ 6. (생략)

7. 영등포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

④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1. ~ 6. (현행과 같음)

7. -----  
----- 국가보훈부장관-----  
-----

8.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한정한다-----  
-----  
-----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의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의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의 범위에서 분납

② (생략)

-----  
-----  
-----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의 범위에서 분납

2. -----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  
내 6회---

3. -----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  
내 9회---

4. ----- 초과: 3년 -----  
-----

② (현행과 같음)